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
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부문 인공지능제품·서비스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공포, 2026. 7.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조의2 신설)
- 나.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

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3 신설)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신설)

바.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안 제16조의5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3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

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직자

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8.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11. 그 밖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
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
공지능서비스”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인공지능 또는 인
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고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⑤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인 기
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법 제1
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인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직자
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65세 이상인 사람

14.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이용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필요성
3.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민간단체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인공지능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 또는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보유 등 해당 분야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 업무 전담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3.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저장

· 처리 설비를 직접 보유하거나, 이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체계를 갖출 것

4. 연구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5. 향후 3년간의 연구개발 목표, 자원 조달 계획 및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이 포함된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것

제16조의3(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설립된 기관이 인공지능연구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연구소의 명칭 및 소재지, 연구소장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
3.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 및 운영관리 규정
4.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5. 향후 3년 간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검토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연구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연구소장
4. 정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장에게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인공지능연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신청, 허가 및 변경 신고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4(인공지능연구소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특화 응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2.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참여기관 간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3.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도입·임차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4. 연구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5.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및 운영비
6.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에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물의 시제품 제작 및 실증 사업화 지원
2. 인공지능연구소 보유 기술의 기업 이전에 필요한 지원
3. 국내외 인공지능 표준화 활동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인공지능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비

제16조의5(인공지능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소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⑦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그밖에 연구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2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에 관한 국가의 소관 사무 중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정 취소 여부의 검토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여부의 검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u> <u>위) 법 제3조제5항에서"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람을 말한다.</u> 1. 「<u>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u> <u>안정지원에 관한 법률</u>」 제2 <u>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u> 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 <u>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u> <u>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u> <u>상위계층</u> 3. 「<u>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u> <u>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u> <u>특별법</u>」 제3조제3호에 따른 <u>농어업인등</u> 4.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 <u>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u> <u>구성원</u> 5.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u> <u>정착지원에 관한 법률</u>」 제2 <u>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u> 6. 「<u>수도권정비계획법</u>」 제2조 <u>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u>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 ③ (생략)
<신설>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의 재직자

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8.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11. 그 밖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
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
는 인공지능서비스”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
스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
인공지능진흥협회가 인공지능

<신 설>

<신 설>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
었다고 확인한 제품 또는 서
비스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⑤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공지
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인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
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비
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인
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직자

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다른 장애인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13. 65세 이상인 사람

14.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

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

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

운 사람으로서 이용비용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

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필요성

3.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 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

기관

2.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
사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출연연구원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
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기업 또는 민간단체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인공지능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 또는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보유 등 해당 분야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 업무 전담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3.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저장·처리 설비를 직접 보유하거나, 이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체계를 갖추는 것

4. 연구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5. 향후 3년간의 연구개발 목표,

<신 설>

재원 조달 계획 및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이 포함
된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할 것

제16조의3(인공지능연구소의 설
립허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
의2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
소 설립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설
립된 기관이 인공지능연구소 지
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연구소의 명칭 및
소재지, 연구소장의 성명을 기
재한 서류
2.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내용
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
3.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 및
운영관리 규정
4.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5. 향후 3년 간의 연구개발 사업

계획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검토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연구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연구소장

4. 정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장에게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인공지능연구소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신청, 허가 및 변경 신고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4(인공지능연구소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특화 응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2.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참여기관 간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3.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도입·임차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4. 연구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에 소요
되는 비용

5.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검
증 체계 구축 및 운영비

6.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에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물의 시제품 제작
및 실증 사업화 지원

2. 인공지능연구소 보유 기술의
기업 이전에 필요한 지원

3. 국내외 인공지능 표준화 활
동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인공지능 연구 성과
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비

제16조의5(인공지능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3
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기관(이
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
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소장의 성명과 주소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3. · 4.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 · 제

5. 공고의 방법

⑦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그밖에 연구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에 관한 국가의 소관 사무 중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정 취소 여부의 검토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여부의 검토

4. · 5. · 6. (현행 제2호,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 제1항제1호부터

<u>2호·제4호</u>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u><신설></u>	<u>제4호까지 및 제6호</u>----- -----.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293